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훈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157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김경훈,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봉양순, 서상열,
서호연,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영실, 이희원,
임춘대, 정준호,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51명)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법령과 맞지 않은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과”를 “시장,”으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을 따른다”를 “제18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하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경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경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